

## 교원업적평가규정

제 정	1999. 3.	개 정	2017. 3.
개 정	2000. 3.	개 정	2020. 3.
개 정	2001. 4.	개 정	2020. 5.
개 정	2002. 4.		
개 정	2003. 10.		
개 정	2004. 4.		
개 정	2005. 4.		
개 정	2006. 3.		
개 정	2007. 1.		
개 정	2007. 10.		
개 정	2009. 1.		
개 정	2010. 1.		
개 정	2011. 1.		
개 정	2012. 1.		
개 정	2012. 12.		
개 정	2013. 11.		
개 정	2014. 4.		
개 정	2015. 5.		
개 정	2015. 9.		
개 정	2016. 3.		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교원의 교육 및 학생지도, 연구 및 창작 활동, 산학협동 및 봉사, 그리고 교원 자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원의 업적 및 자질평가(이하 “업적평가”라 한다)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대학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. 다만, 비정년 계약제 전임교원 및 초빙교원, 겸임교원에 대한 평가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**제3조 (업적의 구분)** 교원의 업적평가의 영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교육 및 학생지도
2. 연구 및 창작활동
3. 산학협동 및 봉사
4. 산학협력
5. 교원의 역량

### 제2장 평가절차 및 심의기구

**제4조 (평가시기 및 절차)** ①교원의 업적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교원의 업적은 본인이 업적내역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항목별 주관 행정부서에 제출하여 등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③교원업적평가의 항목별 주관 행정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6.03.07, 2020.03.26)

1. 교원업적평가는 기획처를 주무부서로 한다.
2.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교육개발에 관한 사항, 수업에 관한 사항, 재학생 충원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주관한다.
3.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입학에 관한 사항은 입학처에서 주관한다.
4.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생복지처에서 주관한다.
5.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처에서 주관한다.
6.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관리산업체 및 동아리활동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다.
7.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취업에 관한 사항은 학생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한다.
8. 제2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외의 영역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
9. 교원의 역량에 관한 평가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

④교원의 역량평가는 소관 학사부총장/단과대학 학장의 평점을 40% 반영하고, 총장의 평가를 60% 반영하되,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[별첨 1] 교원업적평가를 따른다.(개정 2015.09.07, 2020.03.26)

**제5조 (업적의 인정기간)** ①교원의 업적평가는 전년도 11월 2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20일까지의 실적으로 평가한다.(개정 2015.05.04, 2020.03.26)

②각 주관부서는 교원업적과 관련한 실적자료의 인정여부를 검토, 확인, 보완하고 그 결과를 매년 11월 20일 이전까지 기획처에 송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05.04.)

③기획처장은 교원의 업적내역서와 자료 등을 확인한 후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④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업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며, 총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원의 업적평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각 교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이의신청 및 처리)** ①교원은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업적평가 점수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획처를 경유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(개정 2015.09.07, 2020.03.26)

②총장은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사에 부의 할 수 있다.

③ (삭제 2015.09.07.)

④재심사의 의견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제로 하며, 재심 결과는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(삭제 2015.09.07.)

**제7조 (교원업적평가위원회)** ①교원업적을 평가·관리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, 행정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(개정 2015.09.07, 2020.03.26)

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업적 및 역량평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2. 각 행정부서별 교원업적평가 결과 및 역량평가에 대한 검증, 평정, 인증에 관한 사항
3. 심사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

④위원회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3장 업적평가

**제8조 (업적평가 유형)** 업적평가는 평가항목 및 산출기준을 정함에 있어 학문적 특성과 각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대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평가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평가한다.

1. 교육중심
2. 교육·연구중심
3. 연구중심
4. 산학협력중심

**제9조 (평가기준 및 원점수 산정기준)** ①교원의 업적평가는 당해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정하고 이의 달성을 평가한다.

②업적평가는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지표와 원점수 배점기준은 별첨과 같다.

③업적평가기준의 원점수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0조 (평가제외 및 고려대상)** ①교원이 휴직, 연구년 및 연수, 파견 등으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②당해 연도 9월 1일 이후에 임용되는 교원은 당해연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당해 연도 9월 1일 전에 임용되는 교원의 목표는 월 할로 환산하여 목표량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교무위원 또는 총장이 특정 직무를 위촉하여 수행하는 교원의 업적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## 제4장 평가결과의 관리 및 활용

**제11조 (평가결과의 관리)** ①각 행정부서는 제4조제3항에 명시된 교수업적평가 항목의 평가자료를 관리·보관하여야 한다.

②기획처장은 최종 확정된 업적평가결과를 수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업적평가에 관한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(평가결과의 활용)** 업적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데 활용한다.

1. 교원의 승진 및 재계약(재임용) 대상자의 선정
2. 장려교원의 선정
3. 교원의 연구년 대상자 선정
4. 교원의 특별연구비 지원 대상자 선정
5. 교원의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 선정
6. 교원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결정

**제13조 (세부사항)** 교원업적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1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는 소급하여 이에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2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3년 7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6년 7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7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7년 7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적 인정의 특례) 2010년도 12월의 업적 중 동 연도에 평가받지 못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는 2011년도 업적에 업적평가에 포함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규정은 2012학년도 업적평가분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연구실적 인정의 특례)** 2012학년도 연구실적 중 2.2 논문 평가영역의 2.2.2 국제저명학회지, 2.2.3 국제일반학회지, 2.2.4 국내저명학회지의 평가실적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50% 초과인 경우에는 2012학년도 업적평가에서는 달성도 150%까지만 인정하고, 초과 달성분은 2013학년도 업적평가에 포함하여 반영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규정은 2013학년도 업적평가분(2012년 12월 1일 평가시행)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규정은 2012학년도 업적평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.

**제2조 (2012년 3월 신규임용자 종합평가등급의 특례)** 2012년 3월 신규임용자 중 업적평가점수가 5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나 역량평가점수가 50점 만점에 18점 미만으로 최종평가등급이 D등급 판정인 경우에 한하여 C등급으로 상향함.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규정은 2013학년도 업적평가분(2012년 12월 1일 평가시행)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규정은 2014학년도 업적평가분(2013년 12월 1일 평가시행)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4.04.22.)

제1조 (시행일) 규정은 2014학년도 업적평가분(2013년 12월 1일 평가시행)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5.05.04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학년도 업적평가분(2014년 12월 1일 평가시행)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5.09.07.)

제1조 (시행일) 규정은 2015학년도 업적평가분(2014년 12월 1일 평가시행)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6.03.07.)

제1조 (시행일) 규정은 2016학년도 업적평가분(2015년 11월 21일 평가시행)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7.03.27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업적평가분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연구실적 인정의 특례)**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액이 2억이상의 매출을 내고, 산학협력단에 500만원 상당의 기부가 되었을 경우 SCI 논문 1편으로 인정한다.  
②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액이 1억이상의 매출을 내고, 산학협력단에 300만원상당의 기부가 되었을 경우 KCI 논문 1편으로 인정한다.

#### 부 칙(2020.03.26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학년도 업적평가분(2019년 11월 21일 평가시행)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20.05.27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학년도 업적평가분(2019년 11월 21일 평가시행)부터 시행한다. 단, ‘4차

산업혁명 관련 교육혁신 참여실적' 평가요소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시행일로부터 반영한다.

[별첨 1]

## 교원업적 평가

### ◎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 체계

1. 업적평가 : 교육 및 학생지도, 연구 및 창작활동, 산학협동 및 봉사, 산학협력영역으로 구분
  - 1)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: 교내/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활동 및 취업,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
  - 2) 연구 및 창작활동 업적 : 학문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연구활동 및 특허,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의 대외활동에 대한 평가
  - 3) 산학협동 및 봉사 업적 :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및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제활동 및 관리산업체 관리 등의 산학협력 및 취업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
  - 4) 산학협력 업적 :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, 기술이전, 공동연구, 학생취업, 위탁교육, 특허 등의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
2. 역량평가 : 공통역량, 대학주요지표 학과역량, 대학/학과 발전역량으로 구분
  - 1) 역량평가는 총장(60%)과 소관 학사부총장/학장(40%)이 평가하며, 총장 평가부분은 별도로 정한다.
  - 2) 공통역량(개인평가) : 본교 교직원으로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역량평가(공통역량, 특임활동)
  - 3) 대학주요지표 학과역량(학과평가) : 대학주요지표에 대한 학과별 역량평가(재학생충원율, 취업률)
 

※ 대학주요지표 학과역량 평가는 대학주요지표(재학생충원율, 취업률)를 평가하며, 평가방식은 학과별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을 고려하여 교원 개인별로 평가한다.
  - 4) 대학/학과 발전역량(개인평가) : 교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 및 역량에 대한 평가  
(학생역량강화실적, 4학기제 운영실적, 산업체관리실적)
3. 교원평가 : 업적평가(50%) + 역량평가(50%)

### 4. 종합(최종)평가 등급 부여방식

- 1) 종합평가 등급은 최종점수 순위에 따라 S, A, B, C, D의 등급을 부여하며, (S+A)와 D등급을 각각 15% 내외, B 와 C등급은 각각 35% 내외로 하여 제한적인 평가 자율성을 확보함.

등급	S	A	B	C	D
비중(%)	15	35	35	15	
등급부여방식	15% 내외	35% 내외	35% 내외	15% 내외	

- 2)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종합평가 등급은 당해연도 전임교원의 종합(최종)평가 등급을 적용한 등급별 최종점수를 반영하여 종합평가 등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, 등급부여 비중은 전임교원 등급 부여 비중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◎ 업적 및 역량평가 평가 유형

구 분	교육 및 학생지도	연구 및 창작활동	산학협동 및 봉사	유 형				
업적평가 (전임교원)	40 %	40 %	20 %	연구중심				
	50 %	30 %	20 %	교육/연구중심				
	60 %	20 %	20 %	교육중심				
<p>※ 폐과(신입생, 재학생, 취업대상학생 없는 경우) 또는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(교양교육원 등)의 업적평가는 유형 선택에 따른 비중으로 산정하되 별도 평가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영역 중 “1.2 수업평가 - 1.5 학생지도” : 가중치 33%</li> <li>② 연구 및 창작활동 업적영역 : 가중치 100%</li> <li>③ 산학협동 및 봉사 업적영역 : 가중치 선택 가능</li> <li>④ 별도 해당교원 특임활동(정량적, 정성적 목표 부여) : 가중치 = <math>300\% - (① + ② + ③)</math></li> </ul> <p>※ 소속학과 대학원인 교원의 업적평가는 유형 선택에 따른 비중으로 산정하되 별도 평가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영역 : 가중치 선택 가능</li> <li>② 연구 및 창작활동 업적영역 : 가중치 100%</li> <li>③ 산학협동 및 봉사 업적영역 : 가중치 선택 가능</li> <li>④ 별도 해당교원 특임활동(정량적, 정성적 목표 부여) : 가중치 = <math>300\% - (① + ② + ③)</math></li> </ul> <p>※ 특임활동(정량적, 정성적 목표 부여)은 해당년도 업적평가 시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며. 해당 소속기관의 장(학장, 원장) 및 부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기획처로 제출함.</p> <p>(산업체경력교원은 각 영역별 가중치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)</p>								
구 분	교육 및 학생지도	연구 및 창작활동	산학협동 및 봉사	산학협력				
업적평가 (산학협력중점교원)	30 %	70 %		산학협력중심				
	<p>※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의 가중치 합은 67로 고정이며, 그 외 영역의 가중치 합은 173으로 선택하여야 함.</p>							
역량평가	공통역량	대학주요지표 학과역량	대학/학과 발전역량		유 형			
	공통 역량	특임 활동	재학생 총원율	취업률 (건강보험DB)	학생역량 강화실적	4학기제 운영실적	산업체 관리실적	
	20 %	10 %	20 %	20 %	18 %	6 %	6 %	연구중심
	20 %	10 %	20 %	20 %	12 %	12 %	6 %	교육/연구중심
	20 %	10 %	20 %	20 %	9 %	15 %	6 %	교육중심
	20 %	10 %	20 %	20 %	9 %	3 %	18 %	산학협력중심

## ◎ 역량평가 평가내용

	역량구분	역량세부구분	세부내용
역량평가	공통역량 (성취지향, 책임의식, 상호존중)	공통역량 (성취지향, 책임의식, 상호존중)	1. 목표달성을 방안 제시 / 성취지향적 문화조성 2. 도전적인 목표설정 / 효율적 업무추진 3.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자세 보유  1. 책임의식의 정착 / 전파 주도 2. 책임준수 모범 제시 3. 책임감 있는 업무 자세 보유  1. 상호 존중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2. 내 / 외부 구성원들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3. 상대방에 대한 이해 / 원활한 업무 협조
		특임활동	1. 국고사업 연구위원(집필위원), 국고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특임활동
		재학생충원률 학과역량	1. 당해연도 기준 학과(부)별 일반휴학 및 제적(자퇴)현황 2. 당해연도 재학생충원률(4월 1일 및 10월 1일 기준)
대학/학과 발전역량	대학/학과 발전역량	취업률(건강보험DB)	1. 당해연도 6월 1일자 학과(부)별 취업률(건강보험 DB) 및 9월 유지취업률
		학생역량강화실적	1. 학생역량강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(TOEIC 성적 향상 등)
		4학기제운영실적	1. 4학기제 관리 및 운영
		산업체관리실적	1. 전공별 산업체 관리 및 운영

\* 평가기준 : 학과 명칭 변경된 경우 현재 학과에 편입하여 산정함.

\* 평가주체 : 재학생충원율, 취업률(건강보험DB)는 학과(부) 단위로 대학본부에서 상대평가함.

\* 특임활동 평가 : 대학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국고사업,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주요사업에 사업단, 연구위원, 집필위원 등의 특임활동을 수행한 실적을 대학본부에서 상대평가함.

## ◎ 업적 및 역량평가요소 등급체계

### 1. 업적평가(교육 및 학생지도, 연구 및 창작활동 일부분, 산학협동 및 봉사), 역량평가

평가 등급	I	II	III	IV	V	VI	VII
	(Far Exceed)	(Exceed)	(Meet)	(Improving)	(Challenged)	(Needs Improvement)	
배점	100	80	60	40	20	0	-20
정량적 목표	130% 이상	115% 이상	100% 이상	85% 이상	60% 이상	60% 미만	40% 미만
정성적 목표	목표대비 일정,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탁월한 성과를 나타냄	목표대비 일정,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을 초과하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	목표대비 일정,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에 상응하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나타냄	목표대비 일정,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에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나타냄	목표대비 일정,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나타냄	재학생충원률 항목에만 적용	

## ◎ 업적평가요소 등급체계(국제저명 / 국제일반 / 국내저명학회지)

### 예) 목표치 150점 일경우의 업적배점

논문제재 실적(배점기준)	목표 달성도	환산점수
300 점	200 % 달성(목표대비 150%까지 평가점수 인정)	150 점
225 점	150 % 달성	150 점
150 점	100 % 달성(Minimum Requirement 충족)	100 점
75 점	50 % 달성(목표미달)	50 점
60 점	40 % 달성(목표대비 40%미만부터는 감점제 도입)	40 점
45 점	30 % 달성(목표미달)	-10 점
30 점	20 % 달성(목표미달)	-20 점
0 점	0 % 달성(목표미달)	-40 점

[별첨 2]

## 교원업적 및 역량평가기준표

### 1.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	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			
1.1 학생 관리	1.1.1 신입생 충원률	학과	5%		• 신입생수/모집정원×100 (단과대학, 학부(과)별) (감점제)	99%					
	1.1.2 재학생 충원률				• 평가기간 내 신규휴학 감소율 휴학인원/재학인원×100 (정원내외 및 교육과정공동운영생 포함) - 감점제						
					• 평가기간 내 중도탈락 감소율 중도탈락인원/재학인원×100 (정원내외 및 교육과정공동운영생 포함) - 감점제						
					• 평가기간 내 복학 증가율 복학인원/복학대상인원×100 (정원내외 및 교육과정공동운영생 포함) - 감점제						
1.2 수업 평가	1.1.3 신입생 수준	학과	5%		• 1차 합격자 등록률(수시 및 정시)						
	1.2.1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의견	개인	18%		• 학기당 대상강좌 총 평점 평균						
1.3 교육 개발	1.3.1 교육자료 개발활용	개인	15%		학기당 3-20 • 교육자료의 수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		연구중심:25점 교육연구중심:35점 교육중심:45점				
	1.4.1 담당과목수 (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에 영향)	개인			과목당 5 • 학기당 2과목 초과 담당과목수 (학부(과)장 보직교수는 학기당 1과목 초과 담당과목수)						
	1.4.2 외국어 강의	개인			학기당 2.5~10점 • 외국어강의 교과목 수						
	1.4.3 프로젝트 기반 수업운영	개인			학기당 1과목 • 프로젝트 기반 수업운영 과목의 학점단위(1·2학기 : Learning Concert, 여름·겨울학기 : Active Learning)						
	1.4.4 책임시수 미달(감점)	개인			학기당 (-6~-2) • 1학기 또는 2학기 책임시수 미달 시 감점(시수당 -2점, 최대 -6점)						
	1.4.5 수업일수 미준수(감점)	개인			학기당 (-2.5~0) • 1학기 또는 2학기 수업일수 미달 시 감점(책임시수별 수업일수 차등 적용)						
	1.4.6 수업계획서 입력기간미준수(감점)	개인			과목당 (-1.5~-0.5) • 기간 내 미입력 시 감점 (담당 과목수에 따라 차등)						
	1.4.7 성적평가 입력기간 미준수(감점)	개인			과목당 (-1.5~-0.5) • 기간 내 미입력 시 감점 (담당 과목수에 따라 차등)						
	1.4.8 성적이의신청미응답(감점)	개인			학기당 (-3~-1) • 성적이의신청 미응대 시 감점(건수 구간별 감점)						
1.5 학생 지도	1.5.1 학생상담 지도	개인			학기당 10 • 학기당 20회 (1회 부족시 1점 감점)						
	1.5.2 학생행사 입장지도	개인			학기당 1,3,5 • 학기당 평가에 따라 3단계 배점						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
1.6 산학 협력	1.6.1 학과별 취업률	학과	5%		•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대상 업적평가마감일 종합취업률			
			5%		•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상 업적평가마감일 종합취업률			
			5%		•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2차(6월) 유지취업률			
	1.6.2 개인별 건강보험 DB기준 취업실적	개인	10%		• 지도학생 취업 1인당 1점 배점 • 비지도학생 취업 1인당 0.67점 배점	교원 개인당 5점		
	1.6.3 산업체 요구 교육과정 개설	개인	8%	건당 10	• 산업체 요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건수	12점		
	1.6.4 현장실습 및 인턴십	개인			• 현장실습 및 인턴십 참여학생수 (평가등급 구간별 배점)			
	1.6.5 캡스톤디자인 지도	개인			• 전시회 참여 작품수 × 1 (최대 5점)			
	1.6.6 창업(실습)교육프로그램 운영	개인			• 창업교육담당건수 × 3			

## 2. 연구 및 창작활동 업적

평가 영역	평가 요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점기준	평가 기준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
2.1 학과 평가 (연구)	2.1.1 국내외 저명학회지(학과)	학과	10%		• 학부(과)별 국내외 저명 학회지 논문 총점			
	2.1.2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(학과)	학과			• 학부(과)별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			
2.2 논문	2.2.1 박사학위 논문	개인	-	200		- 승진심사요건에만 적용		
	2.2.2 국제저명학회지	개인	30-60% (통합)	450	• 기존방식에서 상한부여 (목표대비 150%까지 평가점수 인정)  • 목표달성이 미흡한 경우 감점부여 (목표대비 40%미만부터 감점부여)	- 중심유형별 기본목표치 연구중심 : 450점 교육/연구중심 : 250점 교육중심 : 150점		
	2.2.3 국제일반학회지	개인		150				
	2.2.4 국내저명학회지	개인		150				
	2.2.5 국내일반학회지	개인	0-20%	100		- 기본목표치 10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
	2.2.6 본 대학 및 연구소 논문집	개인		100				
	2.2.7 타 대학 및 연구소 논문집	개인		80				
	2.2.8 종합 전문잡지	개인	음영부분 합계 0-20%	50		- 기본목표치 45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
	2.2.9 국내저명학회지에의 논평, 서평 등	개인		30				
2.3 저서	2.3.1 전문저서(대학교재 등)	개인	0-20%	100-150		- 기본목표치 10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
	2.3.2 번역서(최초번역) 및 중등교재	개인		80-100				
	2.3.3 수험서 및 사전류	개인		50				
	2.3.4 학술자료집 및 편저	개인		50				
	2.3.5 저서 개정판	개인		30	• 1/3 이상 개정시 인정			
2.4 학술 대회	2.4.1 국제학술대회 초청강연 및 주제발표	개인		150		- 국제저명학회 학술대회 : 80점 • 국제일반학회 학술대회 : 40점  • 등재후보학회지 이상 학술대회 : 40점 • 일반학회 학술대회 : 20점		
	2.4.2 전국규모 학술대회 초청강연 및 주제발표	개인		100				
	2.4.3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	개인		80/40	• 국제저명학회 학술대회 : 80점 • 국제일반학회 학술대회 : 40점			
	2.4.4 전국규모학술대회 논문발표	개인		40/20	• 등재후보학회지 이상 학술대회 : 40점 • 일반학회 학술대회 : 20점			
	2.4.5 국제학술대회 포스터발표	개인		30/15	• 국제저명학회 학술대회 : 30점 • 국제일반학회 학술대회 : 15점			
	2.4.6 전국규모학술대회 포스터 발표	개인		20/10	• 등재후보학회지 이상 학술대회 : 20점 • 일반학회 학술대회 : 10점			
	2.4.7 국제학술대회의 사회 (좌장, 토론)	개인		30/15	• 국제저명학회 학술대회 : 30점 • 국제일반학회 학술대회 : 15점			
	2.4.8 전국규모학술대회의 사회 (좌장, 토론)	개인		20/10	• 등재후보학회지 이상 학술대회 : 20점 • 일반학회 학술대회 : 10점			
	2.4.9 전국규모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석	개인		2	• 학기당 10건 이내만 인정			

평가 영역	평가 요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점기준	평가 기준		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		
2.5 창작 발표	2.5.1 국제전, 미술대전, 상공전 특선이상	개인	0-50%	1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작 작품일 경우만 인정 (도록 및 전체작품 CD제출 시에만 인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목표치 150점 적용 (등급적용 I -VI 등급)</li> </ul>				
	2.5.2 국제전, 미술대전, 상공전 입선	개인		75						
	2.5.3 공인된 공모전 특선이상	개인		75						
	2.5.4 공인된 개인전 (1인, 2인, 기획전)	개인		37.5 - 150						
	2.5.5 공인된 초대전 출품 (국제, 국내)	개인	0-20%	35 - 10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작 작품일 경우만 인정 (도록 및 전체작품 CD제출 시에만 인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목표치 142.5점 적용 (등급적용 I -VI 등급)</li> </ul>				
	2.5.6 공인된 공모전 입선	개인		37.5						
2.6 산학 협력	2.5.7 문예 단행본 출판	개인	0-50%	1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평가기준 엄격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목표치 200점 적용 (등급적용 I -VI 등급)</li> </ul>				
	2.5.8 문예지 계재(소설, 희곡)	개인		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평가기준 엄격화</li> </ul>					
	2.5.9 문예지 계재 (시, 수필, 평론)	개인	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평가기준 엄격화</li> </ul>					
	2.6.1 산업체 등 외부위탁 연구보고서	개인	0-50%	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으로 업적이 인정된 경우의 외부 위탁 연구보고서는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심유형별 기본목표치 연구중심 : 900점 (4,000만원)이상 교육/연구중심 : 675점 (3,000만원)이상 교육중심 : 450점 (2,000만원)이상</li> </ul>				
	2.6.2 산업체 등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	개인		100만원당 22.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학협력단 수입금액으로 평가</li> </ul>					
	2.6.3 국제특허 등록	개인		675						
	2.6.4 국제특허 출원	개인		100						
	2.6.5 국내특허 등록	개인		2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프트웨어 등록시 50점</li> </ul>					
	2.6.6 국내특허 출원	개인		50						
	2.6.7 실용신안 등록	개인		50						
	2.6.8 기술이전 수입 금액	개인		100만원당 6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술이전 수입료 총액</li> </ul>					
	2.6.9 기술이전 건수	개인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술이전 건수</li> </ul>					

## 3. 산학협동 및 봉사 업적

평가 영역	평가 요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점기준	평가 기준			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			
3.1 교외 봉사	3.1.1 정부 중앙행정기관 자문 위원(산하기관 포함)	개인	0-5%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항목당 5건 이내만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목표치 2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</li> </ul>					
	3.1.2 광역자치단체이상 자문위원	개인		5							
	3.1.3 시·군·구 자문위원	개인		2							
	3.1.4 국제학회 및 단체 임원	개인		10							
	3.1.5 전국규모 전문학회 회장단	개인		10							
	3.1.6 전국규모 전문학회 임원	개인		5							
	3.1.7 정부 중앙행정기관 심사 위원(산하기관 포함)	개인		5							
	3.1.8 시·군·구 심사위원	개인		2							
	3.1.9 신문투고 및 방송출연	개인		10							
	3.1.10 잡지게재 및 기고	개인		10							
	3.1.11 비교과활동 및 동아리의 지역사회 봉사활동	개인		5							
3.2 교내 봉사	3.2.1 학부장급	개인	0-20%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가대상 교원 상대평가함(순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목표치 5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</li> </ul>					
	3.2.2 취업주임교수급	개인	0-10%								
	3.2.3 대학발전을 위한 특임활동	개인	0-20%	5-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요도 및 역할별 차등 배점 부총장이 대학특임임무부여가능 ※ 국책사업관련 사업 담당교수 : 대학발전을 위한 특임활동 업적점수 부여</li> </ul>						
	3.2.4 위원회위원 및 학생단체 지도교수	개인		건당 2							
	3.2.5 국제교류	개인		건당 1,3,5							
	3.2.6 입시홍보 고교방문	개인		2							
	3.2.7 입시홍보 고교방문 특강	개인		5							
3.3 산학 협력	3.3.1 산업현장연수/교수법 연수	개인	0-5%	주당 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대 200점까지 인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목표치 2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</li> </ul>					
	3.3.2 산업체 대상 교육	개인		건당 5							
	3.3.3 일반인 및 학생대상 산학협력교육	개인		건당 2							
	3.3.4 산업체등 경영 및 기술지도	개인		건당 15							
	3.3.5 산학연협동교육 및 워크샵 참석	개인		건당 3							
	3.3.6 산업체 현장순회 학생지도	개인		건당 3							
	3.3.7 관리산업체 관리 및 활용	개인	20-40%	0-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리산업체 관리 및 활용실적 (현장실습, 인턴십, 취업 및 Project수주 등)으로 평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목표치 5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</li> </ul>					
	3.3.8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	개인	0-5%	5							
	3.3.9 산업체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실적	개인	0-20%	0-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대 39점까지 인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목표치 3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</li> </ul>					
	3.3.10 장학금 및 기부금 유치	개인		100만원당 5							
	3.3.11 교재교구 및 기자재 유치	개인		1000만원당 10							
	3.3.12 동아리 활동실적	개인	35%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술동아리, 취업동아리에 대한 동아리 활동계획서 대비 실행, 취업, 경진대회 및 운영결과, 지도교수 지도결과에 대한 평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목표치 7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</li> </ul>					

## 4. 수상실적(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)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
수상 실적	4.1.1 이사장상	개인	가중치 미선택	3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원 이사장상</li> <li>개교기념일 수상 제외 (자랑스러운 우송인상, 특별공로상)</li> <li>업적평가기간 내 중복 수상시 최초 수상은 3.0점 부여하며, 중복 수상 실적부터는 원점수의 1/2 배점 부여</li> </ul>			
	4.1.2 총장상	개인		2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장상</li> <li>업적평가기간 내 중복 수상시 최초 수상은 2.0점 부여하며, 중복 수상 실적부터는 원점수의 1/2 배점 부여</li> </ul>			
	4.1.3 정부기관평가 등 주요 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	개인		1.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기관평가(국책사업, 인증평가, 구조 개혁평가 등) 관련 주요 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</li> <li>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 건수별로 원점수 배점</li> </ul>			
	4.1.4 국제수상	개인		0.5-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제공인기관 수상</li> </ul>			
	4.1.5 전국규모단체 수상	개인		0.1-0.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앙정부기관장/자치단체장 및 이와 유사한 수상, 세계유명인명사전 등재 등</li> </ul>			

## 5. 경고·주의실적(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감점제로 실시함)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
경고 · 주의 실적	5.1.1 경고	개인	가중치 미선택	-5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고 시 감점</li> </ul>			
	5.1.2 주의	개인		-2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의 시 감점</li> </ul>			

## 6.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혁신 참여실적(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)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
4차 산업 혁명 관련 교육 혁신 참여 실적	6.1.1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 위촉 (교외 포함)	개인	가중치 미선택	1.0-3.0				
	6.1.2 4차 산업혁명 관련 교내활동	개인		1.0-3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과목 설계, 교수법 개발, 강의 실적 등 고려하여 배점</li> </ul>			

**7. 외국인 유학생 관리실적(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)**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
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적	7.1.1 외국인유학생 관리실적	학과	가중치 미선택	0-3.0	외국인 유학생 수와 중도탈락률			

[별첨 3]

### 교원업적 및 역량평가기준표(산학협력중점교원)

#### 1.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	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			
1.1 학생 관리	1.1.1 신입생 총원률	학과	5%		• 신입생수/모집정원×100 (단과대학, 학부(과)별) (감점제)	99%					
	1.1.2 재학생 총원률				• 평가기간 내 신규휴학 감소율 휴학인원/재학인원×100 (정원내외 및 교육과정공동운영생 포함) - 감점제						
					• 평가기간 내 중도탈락 감소율 중도탈락인원/재학인원×100 (정원내외 및 교육과정공동운영생 포함) - 감점제						
					• 평가기간 내 복학 증가율 복학인원/복학대상인원×100 (정원내외 및 교육과정공동운영생 포함) - 감점제						
1.2 수업 평가	1.1.3 신입생 수준	학과	5%		• 1차 합격자 등록률(수시 및 정시)						
	1.2.1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의견				• 학기당 대상강좌 총 평점 평균						
1.3 교육 개발	1.3.1 교육자료 개발활용	개인	15%		학기당 3~20 • 교육자료의 수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	산학협력중심 : 20점					
1.4 수업 담당	1.4.1 담당과목수 (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에 영향)	개인			과목당 5 • 학기당 2과목 초과 담당과목수 (학부(과)장 보직교수는 학기당 1과목 초과 담당과목수)						
	1.4.2 캡스톤디자인 담당교과목수	개인			과목당 5 • 캡스톤디자인 관련 교과목 수						
	1.4.3 프로젝트 기반 수업운영	개인			학기당 1과목 • 프로젝트 기반 수업운영 과목의 학점단위(1·2학기 : Learning Concert, 여름·겨울학기 : Active Learning)						
	1.4.4 책임시수 미달(감점)	개인			학기당 (-6~-2) • 1학기 또는 2학기 책임시수 미달 시 감점(시수당 -2점, 최대 -6점)						
1.5 학생 지도	1.4.5 수업일수 미준수(감점)	개인			학기당 (-2.5~0) • 1학기 또는 2학기 수업일수 미달 시 감점(책임시수별 수업일수 차등 적용)						
	1.4.6 수업계획서 입력기간미준수(감점)	개인			과목당 (-1.5~-0.5) • 기간 내 미입력 시 감점 (담당 과목수에 따라 차등)						
	1.4.7 성적평가 입력기간 미준수(감점)	개인			과목당 (-1.5~-0.5) • 기간 내 미입력 시 감점 (담당 과목수에 따라 차등)						
	1.4.8 성적이의신청미응답(감점)	개인			학기당 (-3~-1) • 성적이의신청 미응대 시 감점 (전수 구간별 감점)						
1.5 학생 지도	1.5.1 학생상담 지도	개인			학기당 10 • 학기당 20회 (1회 부족시 1점 감점)						
	1.5.2 학생행사 입장지도	개인			학기당 1,3,5 • 학기당 평가에 따라 3단계 배점						

## 2. 연구 및 창작활동 업적

평가 영역	평가 요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점기준	평가기준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
2.1 학과 평가 (연구)	2.1.1 국내외 저명학회지(학과)	학과	산학협력중심 0%		• 학부(과)별 국내외 저명 학회지 논문 총점			
	2.1.2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(학과)	학과			• 학부(과)별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			
2.2 논문	2.2.1 박사학위 논문	개인	산학협력중심 0~70%	-	200	• 기존방식에서 상한부여 (목표대비 150%까지 평가점수 인정) • 목표달성이 미흡한 경우 감점부여 (목표대비 40%미만부터 감점부여)	산학협력중심 : 150점  - 승진심사요건에만 적용	
	2.2.2 국제저명학회지	개인		450				
	2.2.3 국제일반학회지	개인		150				
	2.2.4 국내저명학회지	개인		150				
	2.2.5 국내일반학회지	개인		100				
	2.2.6 본 대학 및 연구소 논문집	개인		100			- 기본목표치 10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
	2.2.7 타 대학 및 연구소 논문집	개인		80				
	2.2.8 종합 전문잡지	개인		50				
	2.2.9 국내저명학회지에의 논평, 서평 등	개인	음영부분 합계 0~20%	30		- 기본목표치 45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
2.3 저서	2.3.1 전문저서(대학교재 등)	개인	0~20%	100~150				
	2.3.2 번역서(최초번역) 및 중등교재	개인		80~100			- 기본목표치 10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
	2.3.3 수험서 및 사전류	개인		50				
	2.3.4 학술자료집 및 편저	개인		50				
	2.3.5 저서 개정판	개인		30	• 1/3 이상 개정시 인정			
2.4 학술 대회	2.4.1 국제학술대회 초청강연 및 주제발표	개인		150		• 국제저명학회 학술대회 : 80점 • 국제일반학회 학술대회 : 40점 • 등재후보학회지 이상 학술대회 : 40점 • 일반학회 학술대회 : 20점		
	2.4.2 전국규모 학술대회 초청강연 및 주제발표	개인		100				
	2.4.3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	개인		80/40				
	2.4.4 전국규모학술대회 논문발표	개인		40/20				
	2.4.5 국제학술대회 포스터발표	개인		30/15				
	2.4.6 전국규모학술대회 포스터 발표	개인		20/10				
	2.4.7 국제학술대회의 사회 (좌장, 토론)	개인		30/15				
	2.4.8 전국규모학술대회의 사회 (좌장, 토론)	개인		20/10				
	2.4.9 전국규모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석	개인		2	• 학기당 10건 이내만 인정			
2.5 창작 발표	2.5.1 국제전, 미술대전, 상공전 특선이상	개인	0~50%	150	• 신작 작품일 경우만 인정 (도록 및 전체작품 CD제출 시에만 인정)	- 기본목표치 15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
	2.5.2 국제전, 미술대전, 상공전 입선	개인		75				
	2.5.3 공인된 공모전 특선이상	개인		75				
	2.5.4 공인된 개인전 (1인, 2인, 기획전)	개인		37.5 - 150				
	2.5.5 공인된 초대전 출품 (국제, 국내)	개인	0~20%	35 - 105	• 신작 작품일 경우만 인정 (도록 및 전체작품 CD제출 시에만 인정)	- 기본목표치 142.5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
	2.5.6 공인된 공모전 입선	개인		37.5				
	2.5.7 문예 단행본 출판	개인	0~50%	150	• 평가기준 엄격화	- 기본목표치 20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
	2.5.8 문예지 게재(소설, 회곡)	개인		50	• 평가기준 엄격화			
	2.5.9 문예지 게재 (시, 수필, 평론)	개인		30	• 평가기준 엄격화			

## 3. 산학협동 및 봉사 업적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	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			
3.1 교외 봉사	3.1.1 정부 중앙행정기관 자문 위원(산하기관 포함)	개인	0-5%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항목당 5건 이내만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목표치 2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</li> </ul>					
	3.1.2 광역자치단체이상 자문위원	개인		5							
	3.1.3 시·군·구 자문위원	개인		2							
	3.1.4 국제학회 및 단체 임원	개인		10							
	3.1.5 전국규모 전문학회 회장단	개인		10							
	3.1.6 전국규모 전문학회 임원	개인		5							
	3.1.7 정부 중앙행정기관 심사 위원(산하기관 포함)	개인		5							
	3.1.8 시·군·구 심사위원	개인		2							
	3.1.9 신문투고 및 방송출연	개인		10							
	3.1.10 잡지게재 및 기고	개인		10							
	3.1.11 비교과활동 및 동아리의 지역사회 봉사활동	개인		5							
3.2 교내 봉사	3.2.1 학부장급	개인	0-20%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평가대상 교원 상대평가함(순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목표치 5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</li> </ul>					
	3.2.2 취업주임교수급	개인									
	3.2.3 대학발전을 위한 특임활동	개인		5-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요도 및 역할별 차등 배점 부총장이 대학특임임무부여가능 ※ 국책사업관련 사업 담당교수 : 대학발전을 위한 특임활동 업적점수 부여</li> </ul>						
	3.2.4 위원회위원 및 학생단체 지도교수	개인		건당 2							
	3.2.5 국제교류	개인		건당 1,3,5							
	3.2.6 입시홍보 고교방문	개인		2							
	3.2.7 입시홍보 고교방문 특강	개인		5							

## 4. 산학협력

평가영역	평가요소	평가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점기준	평가기준	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점수	
4.1 산학협력	4.1.1 학과별 취업률	학과	5%		•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대상 업적평가마감일 종합취업률				
			5%		•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상 업적평가마감일 종합취업률				
			5%		•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2차(6월) 유지취업률				
	4.1.2 개인별 건강보험 DB기준 취업실적	개인	10%		• 지도학생 취업 1인당 1점 배점 • 비지도학생 취업 1인당 0.67점 배점	교원 개인당 5점			
	4.1.3 산업체 요구 교육과정 개설	개인	8%	전당 10	• 산업체 요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건수	12점			
	4.1.4 현장실습 및 인턴십	개인			• 현장실습 및 인턴십 참여학생수 (평가등급 구간별 배점)				
	4.1.5 캡스톤디자인 지도	개인			• 전시회 참여 작품수 × 1				
	4.1.6 창업(실습)교육프로그램 운영	개인			• 창업교육담당건수 × 3				
	4.1.7 산업체 등 외부위탁 연구보고서	개인	0-5%	50	•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으로 업적이 인정된 경우의 외부 위탁 연구 보고서는 제외	- 기본목표치 5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	
	4.1.8 산업체 등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	개인	산학협력중심 0-20%	100만원당 22.5	• 산학협력단 수입금액으로 평가	- 중심유형별 기본 목표치 · 산학협력중심 : 675점 (3,000만원) 이상			
	4.1.9 국제특허 등록	개인	0-50%	675					
	4.1.10 국제특허 출원	개인		100					
	4.1.11 국내특허 등록	개인		225	• 소프트웨어 등록시 50점	- 기본목표치 10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	
	4.1.12 국내특허 출원	개인		50					
	4.1.13 실용신안 등록	개인		50					
	4.1.14 기술이전 수입 금액	개인		100만원당 63	• 기술이전 수입료 총액				
	4.1.15 기술이전 건수	개인			• 기술이전 건수				
	4.1.16 산업체현장연수/교수법 연수	개인	0-5%	주당 5	• 최대 200점까지 인정	- 기본목표치 2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	
	4.1.17 산업체 대상 교육	개인		건당 5					
	4.1.18 일반인 및 학생대상 산학협력교육	개인		건당 2					
	4.1.19 산업체등 경영 및 기술지도	개인		건당 15					
	4.1.20 산학연협동교육 및 워크샵 참석	개인		건당 3	• 학기당 20점까지 인정				
	4.1.21 산업체 현장순회 학생지도	개인		건당 3	• 학기당 225점 까지 인정				
	4.1.22 관리산업체 관리 및 활용	개인	산학협력중심 60%	0-50	• 관리산업체 관리 및 활용실적 (현장실습, 인턴십, 취업 및 Project수주 등)으로 평가	산학협력중심 80점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	
	4.1.23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	개인	0-5%	5		- 기본목표치 2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	
	4.1.24 산업체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실적	개인	0-20%	0-50		- 기본목표치 3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	
	4.1.25 장학금 및 기부금 유치	개인		100만원당 5	• 최대 39점까지 인정				
	4.1.26 교재교구 및 기자재 유치	개인		1000만원당 10					
	4.1.27 동아리 활동실적	개인	산학협력중심 0-35%		• 학술동아리, 취업동아리에 대한 동아리 활동계획서 대비 실행, 취업, 경진대회 및 운영결과, 지도교수 지도결과에 대한 평가	- 기본목표치 70점 적용 (등급적용 I - VI 등급)			

## 5. 수상실적(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)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
수상 실적	5.1.1 이사장상	개인	가중치 미선택	3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원 이사장상</li> <li>개교기념일 수상 제외 (자랑스러운 우송인상, 특별공로상)</li> <li>업적평가기간 내 중복 수상시 최초 수상은 3.0점 부여하며, 중복 수상 실적부터는 원점수의 1/2 배점 부여</li> </ul>			
	5.1.2 총장상	개인		2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장상</li> <li>업적평가기간 내 중복 수상시 최초 수상은 2.0점 부여하며, 중복 수상 실적부터는 원점수의 1/2 배점 부여</li> </ul>			
	5.1.3 정부기관평가 등 주요 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	개인		1.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기관평가(국책사업, 인증평가, 구조 개혁평가 등) 관련 주요 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</li> <li>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 건수별로 원점수 배점</li> </ul>			
	5.1.4 국제수상	개인		0.5-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제공인기관 수상</li> </ul>			
	5.1.5 전국규모단체 수상	개인		0.1-0.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앙정부기관장/자치단체장 및 이와 유사한 수상, 세계유명인명사전 등재 등</li> </ul>			

## 6. 경고·주의실적(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감점제로 실시함)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
경고 · 주의 실적	6.1.1 경고	개인	가중치 미선택	-5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고 시 감점</li> </ul>			
	6.1.2 주의	개인		-2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의 시 감점</li> </ul>			

## 7.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혁신 참여실적(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)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
4차 산업 혁명 관련 교육 혁신 참여 실적	6.1.1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 위촉 (교외 포함)	개인	가중치 미선택	1.0-3.0				
	6.1.2 4차 산업혁명 관련 교내활동	개인		1.0-3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과목 설계, 교수법 개발, 강의 실적 등 고려하여 배점</li> </ul>			

## 8. 외국인 유학생 관리실적(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)

평가 영역	평 가 요 소	평가 단위	가중치	원점수	배 점 기 준	평 가 기 준		
						목표치	달성도	평가 점수
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적	7.1.1 외국인유학생 관리실적	학과	가중치 미선택	0-3.0	외국인 유학생 수와 중도탈락률			